#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서범수ㆍ이헌승ㆍ김기현

박성민 · 김은혜 · 이인선

백종헌 · 김선교 · 강대식

곽규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2024년 4월 시행)되어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및 제121조의19).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8호·제9호 및 제11호"로 한다.

- 1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도심융합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제121조의19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14.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그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 세 등의 감면)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 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 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 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한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 하 "도심융합특구"라 한다) 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 료된 날(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창 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 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도심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제1항제1호 · 제3호 · 제5호 ·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 • 제4호 · 제6호 · 제7호 및 제10 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

융합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
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②
<u> 제8호·제9호 및 제11호</u>
<u>제8호·제9호 및 제11호</u>

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③ ~ ⑩ (생 략)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 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 하다.

1. ~ 12. (생 략) <u><신 설></u>

<신 설>

② (생략)

·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1 10 (원웨고 기수)
1. ~ 12. (현행과 같음)
1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4.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한 기
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그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